

# 대한임상노인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2013년 4월 제정  
2014년 6월 개정  
2018년 9월 개정  
2019년 7월 개정  
2021년 4월 개정  
2023년 1월 개정  
2024년 1월 개정

1. 대한임상노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의 결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 3. [논문 심사 원칙]

투고된 원고 (원저, 종설, 증례, 단신 포함)는 대한임상노인학회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심사 위원]

논문의 심사는 학술지 편집위원과 위촉된 사독위원을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 과정]

(1)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여부를 수락 혹은 거절할 수 있다. 심사 수락시 14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수락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각 논문의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IRB 승인 연구의 경우 승인 번호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는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Accep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Accept로 판정된 논문은 채택한다.

2) Minor 혹은 Major revision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권고 2개월 후까지 저자 회신이 없다면 논문을 Reject (게재불가) 처리 후 저자에게 통보한다.

3)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Reject”로 판정할 수 있다.

① 연구의 내용이 본 학회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할 경우

② 연구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는 경우

③ 연구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④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⑤ 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⑥ 영문 문장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경우

⑦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제출된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 (5) 기타

1) 심사위원의 명단은 논문의 심사 전후에 발표하지 않는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 6. [예외 기준]

주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혹은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학회의 임원 혹은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회원의 심사위원 위촉을 권장한다.

## 7. [이의신청]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 및 내용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 (1) 이의신청시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혹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전체 편집위원 2/3 출석(위임장 포함), 참석한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3)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판정한다(이 경우 논문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 8. 부칙

- 1) 본 규정은 2013년 4월 16일 제정함.
- 2) 개정된 규정은 2014년 6월호부터 적용한다.
-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2월호부터 적용한다.
-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호부터 적용한다.
- 5)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호부터 적용한다.
- 6) 개정된 규정은 2023년 4월호부터 적용한다.
- 7) 개정된 규정은 2024년 4월호부터 적용한다.